



---

# 2026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안전관리계획

---

[관 리 센 터]

===== 목 차 =====

1. 안전관리계획 개요 .....	1
1-1. 목표 및 기본방향 .....	1
1-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	3
2.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7
2-1. 재난 .....	7
2-1-1. 자연재난 .....	7
2-1-2. 사회재난 .....	10
2-2. 안전사고 .....	12
2-2-1. 대학 안전사고 .....	12
2-2-2. 교육시설 안전사고 .....	21
2-2-3. 연구실사고 .....	23
2-3. 감염병 확산 .....	25
2-3-1. 감염병 재난 .....	25
2-4. 범죄 .....	29
2-4-1. 일반범죄 .....	29
2-4-2. 성범죄 .....	34
2-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38
2-5-1. 산업재해 .....	38
2-5-2. 중대재해 .....	46
2-6. 기타 .....	53
2-6-1. 비상사태(전시, 침투·토발 등) .....	53
3.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55

4.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59
5.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70
6.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74

**[붙임자료]**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	75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	76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	77

**[관련 매뉴얼 및 지침]**

1. 교육시설 재난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교육부)
2.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대테러센터)
3.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4.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5.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6.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7.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8.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가이드(교육부)
9.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교육부)
10.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11.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12.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13.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성평등가족부)
1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15.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16.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17. 비상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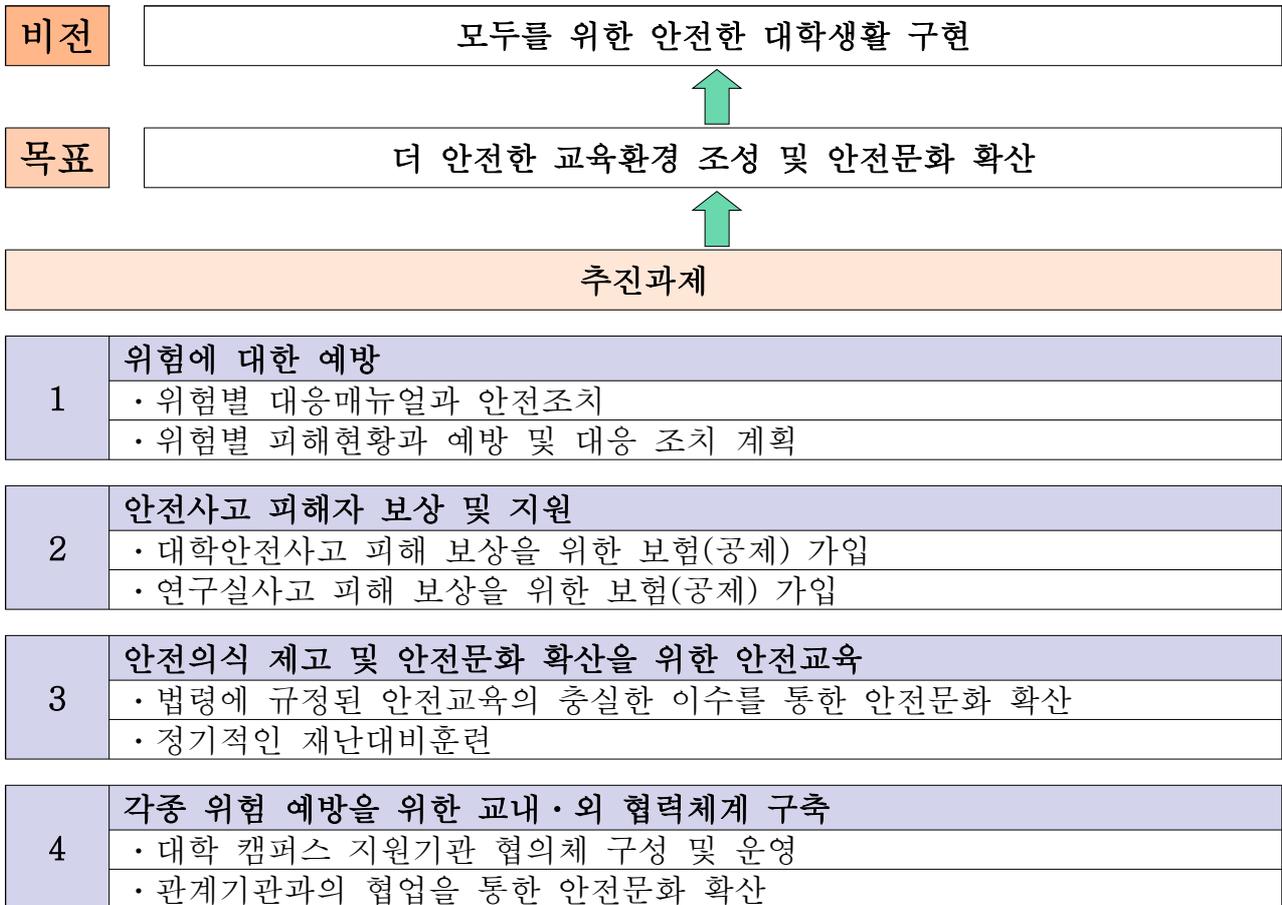
1

안전관리계획 개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1. 목표 및 기본방향



□ 목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 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분	주요 법률
1. 재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6. 비상사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방침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
- 대학 소속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사업장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강조
- 재난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는 총괄부서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학 규모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관련 총괄 업무는 대학별 법정 총괄 재난안전부서(또는 경영책임자 직속 대학 전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인원 확보 노력
  -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대학별 업무분장 부서에서 지정주관
  - 재난·안전 총괄부서는 대학 주요 관리 업무의 대응 절차 및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 체험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수립 절차

- (계획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게시·제출) 학교의 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 1-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 1-2-1. 학교 현황

#### □ 일반현황

학교명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설립구분	사립		
주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				
전화	031-637-1114	FAX	031-639-5749	홈페이지	<a href="https://www.ck.ac.kr/">https://www.ck.ac.kr/</a>
총장	최성신	총괄안전관리책임자(관)	최성신(직책 : 총장)		

#### □ 인원 현황

학생	교직원					합계
	직원	전임교원	현업업무 직원	학생보호 인력	기타	
4,001	97	107	30	-	-	4,235

####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 1-2-2. 조직체계 현황

- 대학 총괄 안전관리 조직체계 확립
  - 총괄 안전관리 전담 조직 설치 및 총괄 안전관리책임자(관)와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안전관리자 지정으로 안전관리 조직체계 마련
- 대학안전 관련 환경 변화 대처 필요
  - 산업안전 체계 구축으로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필요
- 주요기능
  - 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안전점검 추진
  -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범죄, 산업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담당부서현황 및 비상연락망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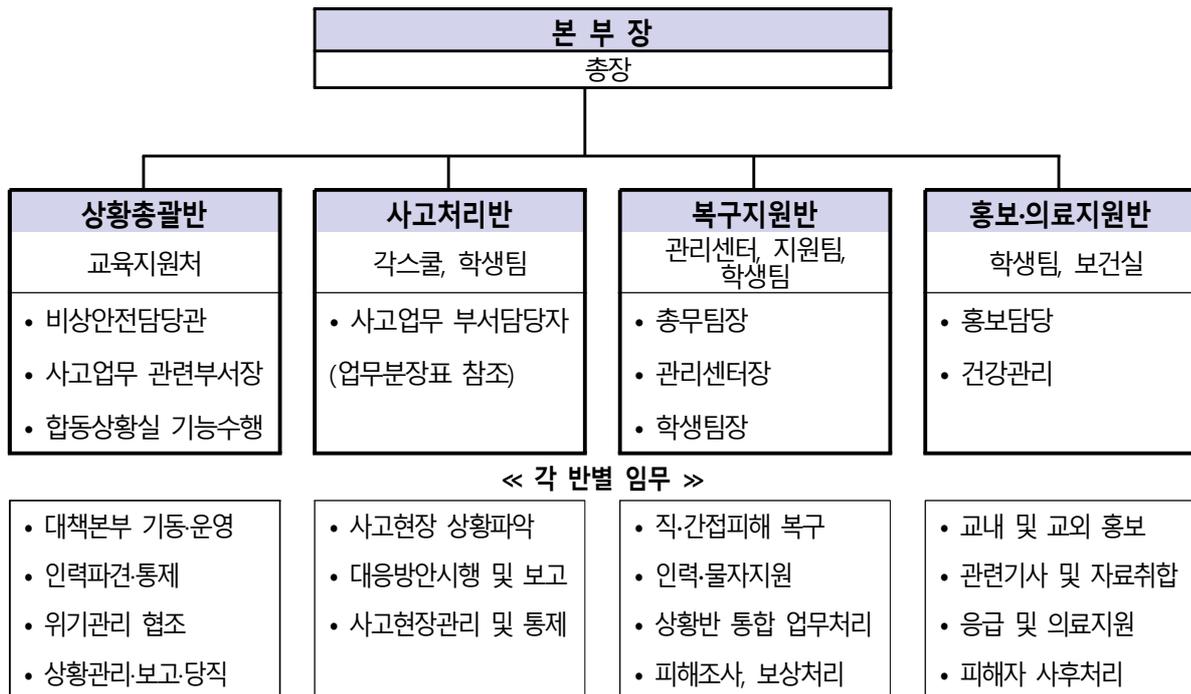
###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 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대학본부	
1. 재난	자연재난	관리센터	전직원
	사회재난	관리센터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팀	전직원
	연구실사고	관리센터	
	교육시설안전	관리센터	
3. 감염병	코로나19	학생팀, 보건실	관리센터
4. 범죄	성범죄	창작자심리인권센터	
	일반범죄	학생팀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관리센터	전직원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센터	
6. 기타	비상사태	예비군대대	관리센터

□ 비상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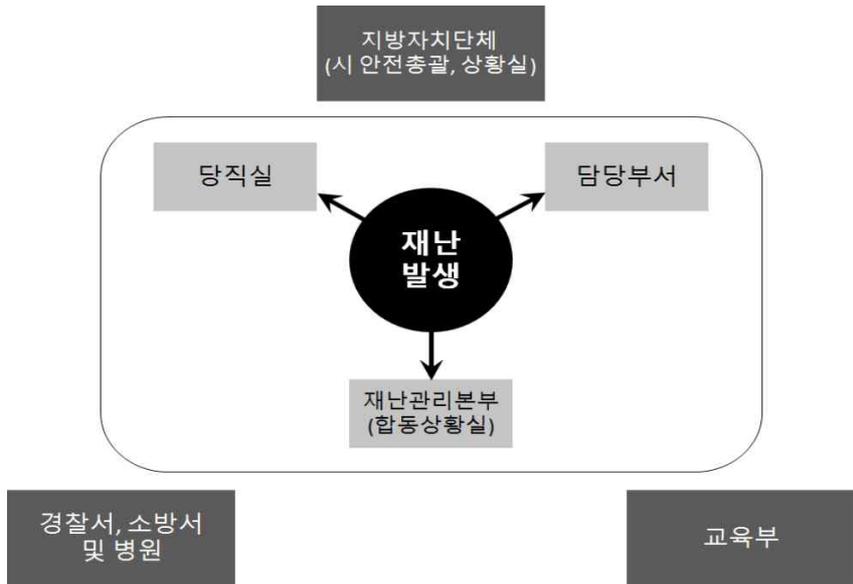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
총장실	총장	최성신	031-639-5707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교무학사팀	팀장	백운	031-639-5715
입학팀	팀장	윤영식	031-639-5992
애니메이션스쿨	실장	문영식	031-639-4431
만화콘텐츠스쿨	직원	하태웅	031-639-4512
게임콘텐츠스쿨	실장	심정섭	031-639-4501
공연예술스쿨	실장	김주호	031-639-4551
푸드스쿨	실장	유성진	031-639-4520
교양교육원	직원	이경은	031-639-4485
패션뷰티스타일스쿨	실장	조현자	031-639-4532
융합콘텐츠스쿨	직원	진명언	031-639-5994
보건실	직원	신은경	031-639-4571
창작자심리인권센터	센터장	강주현	031-639-5899
예비군대대	직원	최문호	031-639-5728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비상연락망 구축

○ 대학 내·외부 재난 상황 전달 체계



○ 재난 심각단계 이전

<b>담당부서</b> ----- 각 재난별 담당부서	<b>당직실</b> ----- 야간대응	<b>재난관리본부</b> ----- 사태 악화 시 운영
------------------------------------	-----------------------------	--------------------------------------

○ 재난 심각단계

<b>담당부서</b> ----- 각 재난별 담당부서	<b>합동상황실</b> ----- 주야대응	<b>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b> ----- 주야대응
<b>이천소방서</b> ----- Tel.031-645-5541	<b>이천시 안전총괄과</b> ----- Tel.031-644-2970	<b>이천시 상황실</b> ----- Tel.031-644-298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1. 재난

## 2-1-1. 자연재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과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 해당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시설물 점검
  - 1) 계절별 안전점검
  - 2) 기타 자체점검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 지정
- 재난 발생 시 개인별 임무 숙지

○ (대응·조치)

-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 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재난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상황보고 및 내용 전파
- 비상조치 등 각 담당별 임무 수행

○ (수습·복구)

-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 사상자에 대해서는 최우선순위로 응급조치 시행
- 피해조사 및 보고, 현장 복구 등 시행 가능한 응급조치 시행

□ 재난대응 · 복구 체계 · 절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	-	-	-	-	
-	-	-	-	-	
계	-	-	-	-	

## 2-1-2. 사회재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 피해현황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 해당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시설물 점검 : 계절별 안전점검을 통하여 화재취약시설 집중 점검
- (건물붕괴)
  -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계절별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해취약시설 집중 점검
- (미세먼지)
  -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	-	-	-	-	
-	-	-	-	-	
계	-	-	-	-	

## 2-2. 안전사고

### 2-2-1. 대학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입학팀	팀장	윤영식	031-639-5992	
팀원	학생팀	직원	김은지	031-639-4479	

####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 피해현황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3	2	10	6	7	5.60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 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3	2	10	6	7	5.60
	계	3	2	10	6	7	5.60

#### □ 원인분석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00공제회, 00보험사 조사 결과
  - 코로나-19로 인한 집단연수 감소,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 등으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학생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교외활동) 대학본부,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수박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 ○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교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개선
- 보행자·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차도 분리시설 마련
- 교내 공사장 주변에는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 교내 차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출입지점과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설치·개선
- 교내도로는 양호한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의 바닥이 평평하고, 파손에 의한 틈새나 구멍이 없고, 흙이나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보행자들의 발이 미끄러지거나, 걸리거나, 부딪치거나, 헛 넘어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바닥표시와 안내판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는 비상 시 비상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야 방해물이 설치·적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속도 규정을 마련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관리
- 교내 경사도로에는 미끄럼방지, 과속방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캠페인 실시

가. 목적 :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제도를 확산하고, 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학생자치기구 임원, 인재개발처, 관리센터 주도하에 이천경찰서, 마장파출소 등의 협조를 받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캠페인 실시

- 1)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제도 안내
- 2)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위치 안내
- 3) 개인별 안전장구류 미구비 운행 학생 대상 계도

○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가. 학생행사 안전관리 규정 공지 및 학생행사 안전관리 교육자료 배포

1) 학생행사 안전관리 규정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적용범위	학생자치기구, 대학본부, 스쿨(학과 및 전공) 등에서 주관하는 교내외 학생행사	
학생행사 안전관리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부서 주관 행사: 행사주관 부서장</li> <li>- 스쿨(과, 전공), 스쿨 학생회 주관 행사: 스쿨원장 (학과장)</li> <li>- 총학생회, 대의원회 주관행사: 학생담당 부서장</li> <li>- 동아리 주관 행사: 동아리 지도교수</li> <li>- 기타 그 밖의 학생행사 : 학생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li> </ul>	
행사의 승인 및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별표 1] 행사 계획서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신청</li> <li>- 안전관리책임자는 그 결과를 학생담당 부서와 공유</li> </ul>	스쿨(전공) 학생회 행사의 경우 원장 전결, 학생팀장 협조 지정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내외 학생행사 시 안전관리책임자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사전에 시행하여야 함</li> </ul>	
교내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책임자 혹은 실무자는 행사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별표 2] 교내행사용 안전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li> </ul>	
교외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책임자는 행사 전 사전답사 또는 지자체 및 관할 관공서에 문의하고, [별표 3] 교외행사용 안전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전에 점검</li> </ul>	
사고대처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책임자 및 인솔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수습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며, 관련 부서(스쿨) 및 학생 담당부서에 상황 통보</li> <li>-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수습 후 [별표 4]의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담당 부서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li> </ul>	

2) 학생행사 안전관리 교육자료 배포 및 교육 당부

- 인재개발처에서 배포하는 학생행사 안전관리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행사시 교육 실시 당부
- 인재개발처 주관으로 학생자치기구 간담회 시 안전관리 교육 실시, 이후 각 기구별로 자체 행사때 안전관리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전달교육 당부

나. 스쿨 학생행사(교외) 동행지도에 대한 지도비 지원

1) 추진배경

-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본부(대학본부, 각 행정부서, 각 스쿨) 등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내외 학생행사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처리에 필요한 대학의 책무성 강화
- 학생행사 안전관리 규정에 교외 행사시 사전답사 및 본 행사 인솔지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지원 필요

○ 현장실습 안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예방 관리

-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성희롱 교육 등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요청(실습기관)

❖ (상해보험) 대학은 현장실습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의무적으로 가입

\* 상해+후유장애+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배상책임+장례비+상조지원 등 보상

❖ (산재보험)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 의무 가입\*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노동부고시) 개정('18.9.11)

< 참여학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부고시) >

구분	고등학교	대학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계고 한정</li> <li>•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 한정</li> <li>•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제 및 전문대학</li> <li>• 「고등교육법」상 실습학기제 등 포괄</li> <li>•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li> </ul>
대상	▶ 약 6만명	▶ 약 15만명

- 실습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휴일 보장에 관한 사항 협의
-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참관 하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근로문제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확인
- ※ 실무직무 범위 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운영계획서 제출 시 실습기관과 협의·체결

▪ 학생의 현장실습 상황 모니터링 및 확인·관리

⇒ 학생이 부적정한 실습사항\*을 알려온 경우 실습기관에 시정요청, 중단 및 복교조치

\* 실습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부여·지시·강요, 실습시간 기준 위반, 실습지원비 미지급 혹은 기준이하 지급, 산업 안전·재해·보건·위생·성희롱 등의 문제, 현장실습 운영조건 변경·조정 발생 등

○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강의실, 강당/체육관, 도서관(실), 미술/음악/무용실, 주방/식당, 사무실/작업·실습실/회의실, 공용공간(현관/복도/계단/화장실), 체육장, 옥외 공간(조경/수경시설), 옥외 조형물 등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안전을 위한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시 대응절차 및 대응행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연락망 편성·관리 및 안내·배포

▪ 대학생활 관련 안전교육·훈련 제공 지원



※ **사고 등급에 따른 보고 기준**

- (심각) 학교장 및 교육부에 지체없이 보고
- (경계) 학교장 및 교육부에 신속하게 보고 (1시간 이내)
- (주의) 학교장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 (근무일 기준 1일 이내)
- (관심)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내부 관련 문서에 기록·관리

※ **자동적으로 '심각' 등급을 받는 사고(또는 위급상황)**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과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대학안전사고

## 관 리 지 침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안전보험비	20	20	20	60	
계	20	20	20	60	

## 2-2-2. 교육시설 안전사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중하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 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 피해현황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 해당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교육시설안전 인증 전체 대상동 취득 완료 : 사후 관리
  - 기타 자체점검 등을 통한 시설물 이상유무 점검
- (주변시설)
  -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교육시설 안전인증	10	10	2	22	
계	10	10	2	22	

### 2-2-3. 연구실사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 피해현황

-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 해당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연구실사고)

- 연구 시작 전 일상점검을 통한 연구실 안전 미비점 확인
- 매년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전문야적인 안전 미비점 확인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담당별 임무 숙지
- 신규·정기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확보
- 타 기관 연구실사고 사례에 대한 분석 및 검토
-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 1) 담당자 지정에 관한 건
  - 2) 연구실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건
  - 3) 연구실 안전환경법에 관한 건
  - 4) 연구실 안전점검에 관한 건
  - 5) 연구실 안전교육에 관한 건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연구실 안전관리비	19	19	19	57	
계	19	19	19	57	

## 2-3. 감염병 확산

### 2-3-1. 감염병 재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제23조의3, 제34조, 제35조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입학팀	팀장	윤영식	031-639-5992	주관부서
팀원	보건실	직원	신은경	031-639-4571	
팀장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협조부서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 □ 위험요인

- (코로나-19)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비말, 호흡기, 눈·코·입 점막 침투로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질환
  - 코로나-19 확진자 증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감염병 상황 장기화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023년 08월 31일부터 2급 → 4급 전환)

#### □ 피해현황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감염자 수	16	921	88	-	-	205
인명피해(사망)	-	-	-	-	-	-

\*코로나19 감염병 4등급으로 전환 후 2024년부터 감염자 수 집계하지 않음

□ 대학 일상 관리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기침할 때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 가리기
- 의료기관 등에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하기

□ 상황 발생 시 관리

① 유증상자 발생 시

- (대학)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KF80 이상) 마스크 착용 후,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 학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증상자에게 배포 및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권장)
- (학내 구성원)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의료기관 방문 또는 자가검사\*
  -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 등에서 방문 검사 실시

② 확진자 발생 시

-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등교 중지 강력 권고
-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학생 : 출석인정, 교직원 : 병가)

※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발췌( '23.8.23.)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구 분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시(2급→4급, 8.31.)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 현행 유지
병상	▶ 지정병상 운영	▶ 현행 유지
치료제	▶ 무상공급	▶ 현행 유지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	▶ 현행 유지
입원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지원 종료
검사비	▶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 의료기관 PCR·RAT 건보지원 (유증상자)	▶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유지 * (보건소)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 ▶ 먹는치료제 처방군(외래 PCR·RAT, 입원 PCR),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 PCR·RAT)
재택/외래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 재택치료 지원(의원 전화상담료 등)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 재택치료 지원 종료
감시·통계	▶ 전수 감시	▶ 양성자 감시
대응체계	▶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 현행 유지

□ 위기 단계 하향(경계→주의)

구 분	현행(2급→4급, 8.31일 이후)	위기 단계 하향시(경계→주의)
검사비	▶ 우선순위 PCR 무상지원 ▶ 먹는치료제 처방군(외래 PCR·RAT, 입원 PCR),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 PCR·RAT)	▶ 우선순위 PCR 무상지원 종료 ▶ 먹는치료제 처방군(외래 PCR, 입원 PCR),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 PCR·RAT) * 먹는치료제 처방군 외래 RAT 건보 지원 종료
진단·검사	▶ 선별진료소 운영	▶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대응체계	▶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 방대본(질병청) 체계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방역물품 구매	1	0.6	0.5	2.1	
계	1	0.6	0.5	2.1	

## 2-4. 범죄

### 2-4-1. 일반범죄

####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기준)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입학팀	팀장	윤영식	031-639-5992	
팀원	학생팀	직원	김은지	031-639-4479	

####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피해현황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 해당 없음

□ 원인분석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00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 교내 폭행 행위, 외부인 침입 사례 등의 일반범죄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피해자 수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기법의 도입과 방범 시설의 확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건 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등 CEPTED 기법 적용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학생지원센터,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들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신변위협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및 홍보
- 음주, 흡연, 마약류 사용 등에 관한 규제와 교육 프로그램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EPTED) 기법 적용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활동의 활성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심각 (빨간색)

※ [별첨12]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비전·목표 참조

비전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		
목표	“원상회복”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속적 지원서비스 제공	“실질적 참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	“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 복귀” 신변 및 정보보호를 통한 2차피해와 재피해 예방
추진 정책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출권 강화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	-	-	-	-	
-	-	-	-	-	
계	-	-	-	-	

## 2-4-2. 성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창작자심리인권센터	센터장	강주현	031-639-5899	
팀원	창작자심리인권센터	직원	김보선	031-639-4487	
팀원	창작자심리인권센터	직원	성미영	031-639-4480	

###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교제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피해현황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	1	3	-	1	1
	성폭력	3	-	-	-	3	1.2
	인권	-	2	1	-	1	0.8
	계	3	3	4	-	5	3
피해자 수	성희롱	-	1	10	-	1	2.4
	성폭력	3	-	-	-	3	1.2
	인권	-	2	1	-	1	0.8
	계	3	3	11	-	5	4.4

□ 원인분석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최근 발생 사건은 동의 개념 및 성인지 감수성 부족, 친밀관계 내 권력 및 관계 역학에 대한 인식 미흡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됨
- 특히 음주 및 사적 공간에서의 사건 발생 비율이 높고, 갈등 상황에서 감정조절 및 관계 대처 역량 부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따라 예방교육 강화, 위험상황 인식 제고 및 사전 대응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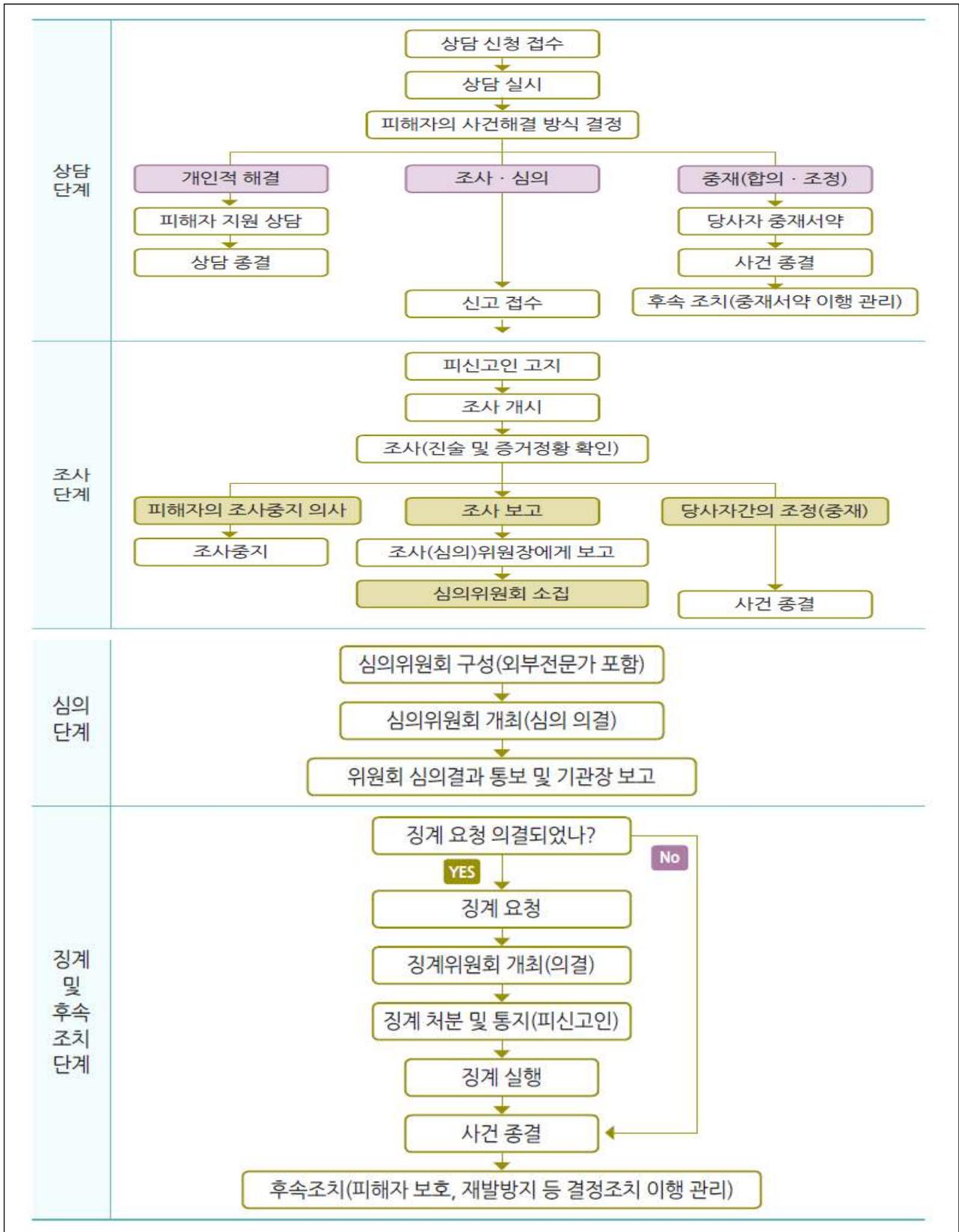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 행위)**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구축·운영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단계 구분

- ❖ **(상담)** 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신체·심리·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이며, 실무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
- ❖ **(조사)** 관련근거, 조사개시, 서류제한 기한, 조사대상 및 출석통지,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담당기구에 사건 신고를 접수·고지 및 조사하는 단계
- ❖ **(심의)** 사실관계, 행위의 심각성, 피해범위 및 영향 등에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징계·조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미비사항·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추진

□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참조



□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1.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기관명), '21.○.○.(작성일)〉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 사건 개요

발생일	년 월 일	사건접수일 (인지시점)	년 월 일	사건 유형	1:1/多:1/1:多/ 불특정다수
사건 발생기관명	000학교 / 00시 00구청		기관유형	국가기관 /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가해자 - 피해자 관계	상급자-하급자/ 하급자-상급자/동료/사제/ 기타/확인불가 등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남성 - 남성	
				남성 - 여성	○
				여성 - 남성	
				여성 - 여성	
				확인 불가	
특이사항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에 의한 사건인가				○
	피해자가 다수인가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 신고 여부(신고시 신고일)				
사건개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기관 조치사항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학생 폭력예방교육	4.1	3.9	13.9	21.9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6.8	6.8	6.3	19.9	
계	10.9	10.7	20.2	41.8	

## 2-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2-5-1.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 피해현황

-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 해당 없음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안전조치)

- 안전교육 시행
  - 1) 현업근로자에 대한 학교 자체 안전교육 시행
  - 2) 외주업체 근로자 : 외주업체 안전팀에서 자체 시행
- 교내 전체 위험성평가 시행을 통한 위험점 파악 및 최소화  
(실시주기 : 반기별 1회)
-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방호구 조치
-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
- 유해·위험 환경에 대한 개인별 안전보호구 비치
- 사고발생시 안전관리규정 보고체계에 따른 사고 보고 및 응급조치
-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 1) 담당자 지정에 관한 건
  - 2) 산업안전보건 기준 안전점검에 관한 건
  - 3) 현업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건
  - 4)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상위법 검토에 관한 건

### ○ (보건조치)

- 분진·흡·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해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1년도 산업재해 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22년도에는 구성된 체계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측정대상물질 확인	예비조사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SDS 확인 (작업환경측정 의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예비조사 (작업환경대상 여부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방법, 측정시간에 따라 측정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의 보존기한</li> </ul>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대상근로자 선정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직) 2년에 1회</li> <li>- (사무직 외) 1년에 1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진단기관에 의뢰 또는 근로자 개별 희망기관에서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 대상자 독려</li> </ul>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미한 사고</li> <li>• 3일 이상 휴업재해</li> <li>• 중대재해(즉시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li> <li>-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발방지계획서 작성</li> <li>• 수시위험성평가</li> <li>•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li> </ul>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대상작업 파악	보호구 선정 및 구입	보호구 지급	서류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 작업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에 따른 적절 보호구 선정 및 구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구지급 대장 서류 기록보존(3년)</li> </ul>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조사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이행계획 참조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사업주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처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의무 이행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관리 8. 안전시설 및 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조직별 주요업무 참조

주체	주요 업무	
<b>사업주 (장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li> <li>■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li> <li>■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li> </ul>	
<b>안전보건 관리책임자</b> (총장, 특수학교장, 소속기관장)	<p>&lt;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li> <li>■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li> <li>■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li> <li>■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li> </ul>	
	<b>안전 관리자</b>	<b>보건 관리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1,000명 : 1명, 1,000명 이상 : 2명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5,000명 : 1명, 5,000명 이상 : 2명 이상)</li> </ul>
<b>관리감독자</b>	<p>&lt;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li> <li>■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li> <li>■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li> <li>■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li> </ul>	
<b>산업보건의</b> (현업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li> <li>■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li> <li>■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등</li> </ul>	
<b>산업안전 보건위원회</b> (현업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p>&lt;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중대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li> </ul>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위험성평가	4.4	4.4	4.4	13.2	
계	4.4	4.4	4.4	13.2	

## 2-5-2. 중대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중대재해처벌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 피해현황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 해당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 (환경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중대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마련

- 안전보건 법규 등 관련 규정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적극 발굴·제거 등 재해예방과 개선 활동 지속적 실시
- 모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안전문화 조성·지원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시 소통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등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의 핵심과제로 사업장별(특수학교, 소속기관, 본부 순)·직종별(급식, 청소, 시설 등)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요인 발견 즉시 개선
  -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분기별 1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 (주요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해당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자체 평가 실시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 게시판 내 안전보건 건의함을 신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의견수렴	노사 간담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 협의)	개선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방문 의견 청취</li> <li>• 의견청취함(WIKI 게시판)</li> <li>• 안전보건교육</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청된 의견에 대한 재해예방 반영여부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너무 커서(100L) 근골격계에 부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조치</li> <li>• 기관내 분리배출 봉투를 50L로 교체</li> </ul>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청소·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등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교육부, '22.)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미한 사고</li> <li>• 3일 이상 휴업재해</li> <li>• 중대재해(즉시 보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발방지계획서 작성</li> <li>• 수시위험성평가</li> <li>•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li> <li>-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li> </ul>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국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어 기관 임의의 기준·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 업무의 중요도·계속성을 감안, 중대재해 업무담당 전담인력(2인 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설치 추진
- ※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의무적으로 설치
- 전담조직의 중대재해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므로 두 업무는 구분 운영 추진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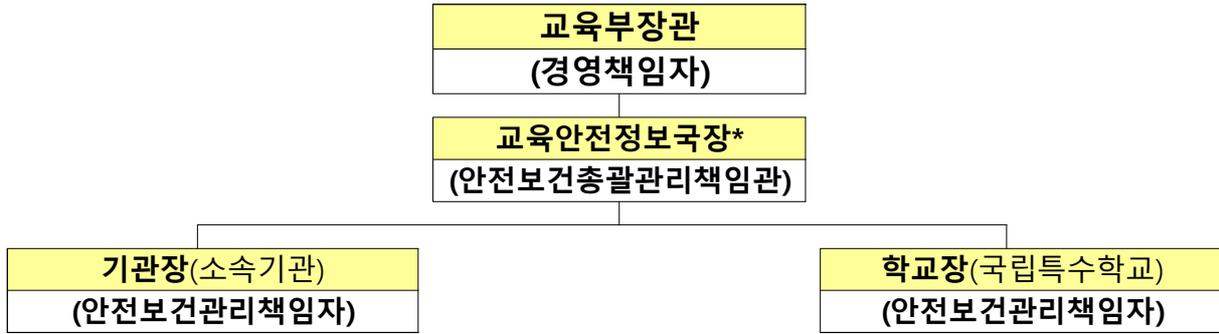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중대재해 관리체계 및 이행계획 참조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교육기관 제외
의무 이행사항	<p align="center"><b>&lt;&lt;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gt;&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li> <li>2.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li> <li>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li> <li>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li> <li>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li> <li>6.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li> <li>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li> <li>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li> <li>9.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li> </ol> <p align="center"><b>&lt;&lt;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gt;&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li> <li>2. 인력, 예산 지원</li> <li>3.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li> </ol>

□ 교육부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체계 참조

○ 대상 : 교육부(본부), 소속기관(6기관), 국립특수학교(5교)



\* 법적으로 교육부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으나 대상기관의 상시근로자 수가 1,443명인 점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역할과 책임

구분	주요 역할
경영책임자(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대표 및 총괄</li> </ul>
안전보건총괄 관리책임관 (교육안전정보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의 철저 이행, 사전·사후 지원 및 지도 등 관련업무 전반을 총괄·지도</li> <li>① 소속기관과 국립특수학교의 안전관리체계 구성 이행 여부 점검 확인</li> <li>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지원</li> <li>③ 직종별 사업장별 위해요인 확인 개선 방법 지도 및 지원</li> <li>④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li> <li>⑤ 도급·용역 위탁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li> <li>* 소속기관, 국립특수학교 현장에 재해예방 안착 전까지 안전보건 이행상황 수시 점검(현장방문 및 서면 포함 월 1회 이상)</li> </ul>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학교장, 소속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li> <li>•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li> <li>•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li> <li>•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준수</li> </ul>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위험성평가	4.4	4.4	4.4	13.2	
계	4.4	4.4	4.4	13.2	

## 2-6. 기타

### 2-6-1. 비상사태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통합방위법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4 등

#####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5조 등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예비군대대	직원	최문호	031-639-5728	
팀원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 해당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충무실시계획 등 수립
  - 매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11. 15한 제출, 12월 교육부 승인)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	-	-	-	-	
-	-	-	-	-	
계	-	-	-	-	

## 3-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대학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연구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3-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 민법 &amp; 학교안전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 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 가입현황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총 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4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	2024.6.1. ~2025.6.1.	3,834	3,676	14,095, 000	7	103,585,800	-	-	
2025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	2025.6.1. ~2026.6.1.	4,567	3,735	17,057, 000	7	4,103,060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		비고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학교시설)	대인	1억	10억	차기부담금 100,000
	대물	-	5천만	
배상책임 (교직원)	대인	1억	10억	
	대물	-	5천만	
교내·외 (교내·외 치료비 담보 등)	재학생치료비	4백만	4백만	
	사망, 후유장해	3천만	3천만	
신입생(OT) 등 (신입생 학교행사 중 담보)	치료비	4백만	4백만	
	사망, 후유장해	3천만	3천만	

### 3-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 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 가입현황

기준 연도	구분	시작일 종료일	가입 면적	연간총 보험료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	일반건물	2025.1.1. ~ 2025.12.31.	64,714㎡	9,707,100	-	-	-	-	
	고가건물		-	-	-	-	-	-	
2026	일반건물	2026.1.1. ~ 2026.12.31.	64,714㎡	11,842,610	-	-	-	-	배상책임 866,650
	고가건물		177㎡	229,200	-	-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비고
	1인당	1사고당	
대인	300,000,000원	300,000,000원	
대물	1,000,000,000원		

### 3-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가입현황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총보 험료(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	연구실 안전공제	2025.03 ~2026.02	770	1,030	793,100	-	-	-	-	
2026	연구실 안전공제	2026.03 ~2027.02	940	990	930,600	-	-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내용	비고
유족급여	- 피공제자 1인당 2억원 정액 보상	
장해급여	- 피공제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후유장해 등급별 정액 보상	
요양급여	- 피공제자 1인당 20억원 실손 보상	
장의비	- 피공제자 1인당 1천만원 정액 보상	
입원급여	- 피공제자 1인당 1일당 5만원 보상, 3일초과 30일 한도내	
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	- 약관에서 정하는 중증화상 진단시 1천만원 보상 - 중등도화상 진단시 4백만원 보상(단, 대학(원)생에 한함)	
회원서비스 (추가보상)	- 수업료 손실지원금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 치료 후 간병비용 지원(최대 30일 한도)	

### 3-5.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7의2.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창작자심리인권센터	센터장	강주현	031-639-5899	주관부서
팀원	창작자심리인권센터	직원	김보선	031-639-4487	
팀원	창작자심리인권센터	직원	성미영	031-639-4480	
팀장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협조부서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 □ 지원 내용

구분	추진내용	비고
성장코칭 및 회복 프로그램	무기력, 정서, 인지, 몰입, 번아웃 코칭 등 재학생의 창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어려움을 유형화하여 1:1 개별 코칭 프로그램 진행	
개인심리상담사업	1:1 밀착 심리 지원을 통해 심리정서 안정화, 적응력 향상을 통한 중도탈락 예방 목적으로 운영, 전국민마음투자사업 운영을 통한 휴학생 심리지원 강화	
위기학생심리지원 사업	위기군 사전선별, 전문가 긴급대처, 예방교육을 통한 심리정서 위기군의 단계별/밀착관리(주야간 개인상담 지원, 위기대상군 선별검사 및 개입), 지역정신건강기관과의 연계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네트워크간담회, 마음안심버스,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등)	

## 4-1. 재난안전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 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주관부서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팀장	입학팀	팀장	윤영식	031-639-5992	협조부서
팀원	기숙사	직원	박지훈	031-639-4576	

##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5.03.17~03.30.	30분	510명	
교직원		30분	3명	
학생	25.04.01.	2시간	393명	
교직원		2시간	2명	
학생	25.09.29.	30분	484명	
교직원		30분	6명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화재대피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 시 응급대피 행동요령 실습 및 관련 영상 시청</li> <li>소화기 및 소화전을 사용한 화재 진압훈련</li> </ul>
소방합동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 발생시 대응 행동요령 실습 및 관련 영상 시청</li> <li>소화기 및 소화전을 사용한 화재 진압훈련</li> </ul>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6.04.01.	2시간	588명	
교직원		2시간	4명	
학생	26.09.01.	2시간	588명	
교직원		2시간	4명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화재대피훈련(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시 응급대피 행동요령 실습영상 시청</li> <li>• 소화기(전) 사용 소방 활동방법 교육영상 시청</li> </ul>
소방합동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면 소화기 및 소화전을 사용한 화재 진압훈련</li> </ul>

## 4-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입학팀	팀장	윤영식	031-639-5992	주관부서
팀원	학생팀	직원	김은지	031-639-4479	
팀원	보건실	직원	신은경	031-639-4571	
팀장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협조부서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분)	인원	예산
심폐소생술 교육	25.04.01.	19:50~20:50	277	1,460,000
	25.04.07.	17:00~18:00	25	
	25.05.07.	18:00~18:50	21	
현장실습 응급처치교육	25.06.24.	18:30~19:20	22	400,000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5.09.29.	18:40~19:40	149	640,000
글로벌 봉사단 응급처치교육	25.12.11.	19:00~19:50	16	-
계			510	2,500,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심폐소생술 교육	- 내용 :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하여 응급 상황 대처 능력 향상 - 장소 : 어울림관, 청강홀 영상관 - 소요예산 : 1,460,000원
응급처치교육	- 내용 : 해외 실습 및 해외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응급처치 능력 향상 - 장소 : 청강홀 5층 영상관 - 소요예산 : 400,000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내용 : 실생활에 필요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하여 응급 상황 대처 능력 향상 - 장소 : 어울림관 5층 영상관 - 소요예산 : 640,000원
글로벌 청강봉사단 응급처치교육	- 내용 : 글로벌 청강봉사단 대상으로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처치 능력 향상 - 장소 : 청강홀 5층 영상관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26.04.01.	60	250	660,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1회 실시 예정

### 4-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	-	-	-
교직원	-	-	-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학생	-
교직원	-

####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	-	-	-
교직원	-	-	-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	-

#### 4-4. 연구실 안전교육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집체	1	259명	2,000,000
정기교육훈련	온라인	2	311명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법적 안전교육 내용 실시
정기교육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법적 안전교육 내용 실시

####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집체	1	약 260명	-
정기교육훈련	온라인	2	약 990명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	신입생 O.T를 이용한 집체교육 예정
정기교육	대학 자체 LMS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 예정

#### 4-5. 감염병 예방교육

##### 감염병 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팀	팀장	윤영식	031-639-5992	
팀원	학생팀	직원	김은지	031-639-4479	
팀원	보건실	직원	신은경	031-639-4571	

####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감염병 공지사항 운영	-	-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홈페이지 운영	• 감염병 공지사항 운영 중이며, 사안 발생시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공지사항 운영	웹페이지 안내	사안 발생시	전체대상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감염병 공지사항 운영	• 홈페이지 감염병 공지사항을 지속 운영

#### 4-6. 성범죄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법 등

######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창작자심리인권센터	센터장	강주현	031-639-5899	
팀원	창작자심리인권센터	직원	김보선	031-639-4487	
팀원	창작자심리인권센터	직원	성미영	031-639-4480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백만원)
학생	25.03.04.~12.30.	2시간	2,507	3.9
교직원	25.03.04.~12.30.	4시간	515	6.8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생/재학생 폭력예방교육(학내 LMS 사용 이러닝 교육 : 대상 세분화)</li> <li>- 해외봉사단 대상 폭력예방교육(약속문 제정 / 대면)</li> <li>- 스쿨 전공 특성화 폭력예방교육 (만화 / 게임 / 공연 / 패션스쿨 / 대면,비대면)</li> <li>- 재학생 대상 실전 성교육을 통한 예방교육(비대면)</li> </ul>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폭력예방교육 (사이버연수원을 통한 온라인 수강)</li> <li>- 고위직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비대면)</li> <li>- 전임교원 대상 성인기 감수성 교육(비대면)</li> </ul>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백만원)
학생	26.03.04.~12.30.	2시간	2,000	13.9
교직원	26.03.04.~12.30.	4시간	500	6.3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생/재학생 폭력예방교육(학내 LMS 사용 이러닝 교육 : 대상 세분화)</li> <li>- 스쿨 전공 특성화 폭력예방교육 (공연 / 게임 / 패션스쿨 대상)</li> </ul>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폭력예방교육 (사이버연수원을 통한 온라인 수강)</li> <li>- 대면 교육(교원, 직원, 고위직 각각 1회 이상)</li> </ul>

#### 4-7. 비상대비 교육·훈련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예비군대대	직원	최문호	031-639-5728	
팀원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	-	-	-
교직원	-	-	-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충무실시계획	비상대비에 따른 이동 및 대응 절차 등

####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	-	-	-
교직원	-	-	-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충무실시계획	비상대비에 따른 이동 및 대응 절차 등

#### 4-8.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육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성화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팀	팀장	윤영식	031-639-5992	
팀원	보건실	직원	신은경	031-639-4571	

####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마약 예방 교육	25.05.07.	19:00~19:50	19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의 개념 및 종류</li> <li>- 마약 사용의 위험성과 건강 영향</li> <li>- 마약 관련 법률 및 처벌</li> <li>- 마약 중독 예방 및 오남용 예방교육 등</li> <li>- 강사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강사</li> </ul>

####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2025년 마약 예방 교육 운영 결과, 교육 내용과 방식이 대학생 대상의 특성과 요구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해, 참여도 및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 설문 결과에서도 실질적 도움도와 현장 적용성 측면의 평가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함
- 이에 따라 2026년에는 동일한 형식의 일괄적 마약 예방 집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기로 함

## 5

##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5-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 5-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 재난

##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관련부서		비고
	전화번호	직급	
경기 소방안전본부	031-230-5800	소방준감	재난대응과
중앙119구조본부	031-570-2070	팀장	신속대응1팀
한국전기안전공사	063-716-2337	팀장	재해관리팀
한국가스안전공사	043-750-1240	처장	비상안전보건센터
한국전력공사	031-630-7233	안전관리	이천 전력공급부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031-630-4200		응급실 대표번호
이천시보건소	031-644-2000		보건소 대표번호

## 2) 상황실 운영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31-639-5755	bkchoi@ck.ac.kr	교육지원처 관리센터

□ 안전사고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관련부서		비고
	전화번호	직급	
경기 소방안전본부	031-230-5800	소방준감	재난대응과
중앙119구조본부	031-570-2070	팀장	신속대응1팀
한국전기안전공사	063-716-2337	팀장	재해관리팀
한국가스안전공사	043-750-1240	처장	비상안전보건센터
한국전력공사	031-630-7233	안전관리	이천 전력공급부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031-630-4200		응급실 대표번호
이천시보건소	031-644-2000		보건소 대표번호

2) 상황실 운영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31-639-5755	bkchoi@ck.ac.kr	교육지원처 관리센터

□ 감염병 확산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관련부서		비고
	전화번호	직급	
중앙사고수습본부	044-202-2117		당직실 대표번호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050	과장	위기대응총괄과
국립중앙의료원	02-6260-3189	대표번호	감염병정책개발팀
환경부	044-201-6490	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이천시보건소	031-644-4021	주무관	감염병 관리과
지역 생활치료센터	031-645-3373	주무관	재택치료지원TF팀

2) 상황실 운영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31-639-5755	bkchoi@ck.ac.kr	교육지원처 관리센터

□ 범죄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관련부서		비고
	전화번호	직급	
법무부 스마일센터	031-235-1295		수원스마일센터
검찰	1301		콜센터 대표번호
경찰청	182		민원대표번호
전국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	02-586-1295		대표전화
경기남부 해바라기센터	031-215-1117		대표전화

2) 상황실 운영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31-639-5755	bkchoi@ck.ac.kr	교육지원처 관리센터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직급	
경기 소방안전본부	031-230-5800	소방준감	재난대응과
중앙119구조본부	031-570-2070	팀장	신속대응1팀
한국전기안전공사	063-716-2337	팀장	재해관리팀
한국가스안전공사	043-750-1240	처장	비상안전보건센터
한국전력공사	031-630-7233	안전관리	이천 전력공급부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031-630-4200		응급실 대표번호
이천시보건소	031-644-2000		보건소 대표번호

2) 상황실 운영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31-639-5755	bkchoi@ck.ac.kr	교육지원처 관리센터

□ 비상사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직급	
국방부	02-748-5762	대표전화	재난관리지원과
군부대			
지자체	031-644-2980	주무관	안전기획팀

2) 상황실 운영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31-639-5755	bkchoi@ck.ac.kr	교육지원처 관리센터

## 6-1. 역할과 임무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부서에서는 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점검, 대책수립 수행
- 위험별 상황관리전담 부서에서는 지휘부(총괄 담당, 상황 총괄), 실무반(상황 대응, 사고 수습, 당직), 협조부서(언론 대응, 예산 협력,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위험상황 대응 및 관리 수행

## 6-2. 관계 법령 등 연계

- 관련 법령, 재난안전관리 규정, 및 위기대응 표준·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계 법령·규정·매뉴얼 개정 시 대학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 시·도 및 시·군·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협조하여 대학안전관리 집행계획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필요

## 6-3.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시행

-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개인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개인별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안내 실시
- 각 대학은 중대본 발표, 학내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기능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내 공유
  - 비상상황에도 유지해야할 필수·핵심기능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

## 6-4. 대학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대학별 자체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의 구체적 적용 대상 및 범위 설정
  - 안전교육 실시,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 학교장의 책무 규정
  - 대학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절차 규정
  - 대학안전사고 예방·조사 위원회 구성·운영관리
  - 대학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관리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관리 등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 재난	팀장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audgus22@ck.ac.kr	주관부서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bkchoi@ck.ac.kr	협조부서
	② 사회 재난	팀장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audgus22@ck.ac.kr	주관부서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bkchoi@ck.ac.kr	협조부서
2. 안전 사고	① 대학 안전 사고	팀장	입학팀	팀장	윤영식	031-639-5992, ysyoon@ck.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팀	직원	김은지	031-639-4479, ejkim@ck.ac.kr	협조부서
		팀원					
	② 교육 시설 안전 사고	팀장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audgus22@ck.ac.kr	주관부서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bkchoi@ck.ac.kr	협조부서
		팀원					
③ 연구실 사고	팀장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audgus22@ck.ac.kr	주관부서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bkchoi@ck.ac.kr	협조부서	
	팀원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팀장	입학팀	팀장	윤영식	031-639-5992, ysyoon@ck.ac.kr	주관부서
		팀원	보건실	직원	신은경	031-639-4571, salamat7@ck.ac.kr	협조부서
		팀장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audgus22@ck.ac.kr	협조부서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bkchoi@ck.ac.kr	협조부서
4. 범죄	① 일반 범죄	팀장	입학팀	팀장	윤영식	031-639-5992, ysyoon@ck.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팀	직원	김은지	031-639-4479, ejkim@ck.ac.kr	협조부서
		팀원					
	② 성범죄	팀장	창작자심리 인권센터	센터장	강주현	031-639-5899, hrights@ck.ac.kr	주관부서
		팀원	창작자심리 인권센터	직원	김보선	031-639-4487, hrights@ck.ac.kr	협조부서
		팀장	창작자심리 인권센터	직원	성미영	031-639-4480, hrights@ck.ac.kr	협조부서
5. 산업 재해 및 중대 재해	① 산업 재해	팀장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audgus22@ck.ac.kr	주관부서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bkchoi@ck.ac.kr	협조부서
		팀원					
	② 중대 재해	팀장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audgus22@ck.ac.kr	주관부서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bkchoi@ck.ac.kr	협조부서
		팀원					
6. 기타	① 비상 사태	팀장	예비군대대	직원	최문호	031-639-5728, rainman117@ck.ac.kr	
		팀원	관리센터	센터장	김명현	031-639-5753, audgus22@ck.ac.kr	
		팀원	관리센터	직원	최범기	031-639-5755, bkchoi@ck.ac.kr	
		팀원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발생건수	3	2	10	6	7	5.6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3	2	10	6	7	5.6
	계	3	2	10	6	7	5.6		
	② 교육시설안전사고	발생건수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③ 연구실사고	발생건수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3. 감염병확산	① 코로나-19	감염자 수	16	921	88	-	-	205	
		인명피해(사망)	-	-	-	-	-	-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피해자 수							
	② 성범죄	발생건 수	3	-	-	-	3	1.2	
		피해자 수	3	-	-	-	3	1.2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② 중대재해	발생건수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6. 기타	① 비상사태	발생건수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1. 재난	① 자연재난 ○○○사업 ○○○사업 ○○○사업 계					
	② 사회재난 ○○○사업 ○○○사업 ○○○사업 계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안전보험 ○○○사업 ○○○사업 계	20	20	20	60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안전인증 ○○○사업 ○○○사업 계	10	10	2	22	
	③ 연구실 사고 안전관리비 ○○○사업 ○○○사업 계	19	19	19	57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 ○○○사업 ○○○사업 계	1	0.6	0.5	2.1	
4. 범죄	① 일반범죄 ○○○사업 ○○○사업 ○○○사업 계					
	② 성범죄 ○○○사업 학생 폭력예방교육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계	4.1	3.9	13.9	21.9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위험성평가 ○○○사업 ○○○사업 계	4.4	4.4	4.4	13.2	
	② 중대재해 위험성평가 ○○○사업 ○○○사업 계	4.4	4.4	4.4	13.2	
6. 기타	① 비상사태 ○○○사업 ○○○사업 ○○○사업 계					